##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37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윤재옥・김기웅・박충권

이인선 · 최보윤 · 진종오

김예지 • 박상웅 • 최수진

김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팽배하고, 노동조합의 자체 임원 선출에 부정 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 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 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 및 제92조 등).

#### 법률 제 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9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의2.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 16. 회계감사원(會計監查員)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
- 17.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
- 18. 조합원의 정보요구권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 중 "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書類는 3年間"을 "제1항제4호의 서류는 3년간, 제1항제5호의 서류는 5년간 각각"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회계감사원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회계감사원)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회계감사원을 둔다.
- 제17조의3(감사위원회) ①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나 1천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에는 회계감사원을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다만, 5년 이상 해당 노동조합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
-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⑤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나 1천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은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선거의 관리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會計監査員으로"를 "회계감사원 또는 감사위원회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會計監査員은"을 "회계감사원 또는 감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제93조제2호 중 "第21條第1項·第2項 또는 第31條第3項"을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규약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 규약을 첨부하여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자는 이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규약을 보완하여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치·보존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회계감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회계감사원은 임기 만료 또는 해임 시까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원 또는 제1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條(規約) 勞動組合은 그 組織	第11條(規約)
의 自主的・民主的 운영을 보	
장하기 위하여 당해 勞動組合	
의 規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9의2.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6. 회계감사원(會計監査員)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
<u>&lt;신 설&gt;</u>	17.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는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u>&lt;신 설&gt;</u>	18. 조합원의 정보요구권에 관
	<u>한 사항</u>
第14條(書類備置등) ① (생 략)	第14條(書類備置등) ① (현행과
	같음)
② 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書	② 제1항제4호의 서류는 3년간,
類는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제5호의 서류는 5년간 각
	<u> 각</u>
第16條(總會의 議決事項) ① 다음	第16條(總會의 議決事項) ①
各號의 사항은 總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2. (생 략) <u><신 설></u>

3. ~ 9. (생 략) ② ~ ④ (생 략) <u><신 설></u>

<u><신</u> 설>

1. • 2. (현행과 같음)

 2의2.
 회계감사원
 또는 감사위

 원회
 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회계감사원) 노동조합 은 회계감사를 위하여 1인 이 상의 회계감사원을 둔다.

제17조의3(감사위원회) ① 전국단 위의 노동조합이나 1천명 이상 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에는 회계감사원을 갈음하여 감사위 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은 전문성을 가진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다만, 5년 이상 해당 노동조합의 임원이었던 사람은제외한다.
- ④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⑤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第23條(임원의 자격 등) ①・② 第23條(임원의 자격 등) ①・② (생 략) <신 설>

第25條(會計監査) ① 勞動組合의 第25條(會計監査) ① ------代表者는 ユ 會計監査員으로 하여금 6月에 1回 이상 당해 勞動組合의 모든 財源 및 用途, 주요한 寄附者의 姓名, 現在의 經理 狀況등에 대한 會計監査 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監査結果를 전체 組合員에게 公開하여야 한다.

② 勞動組合의 會計監查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勞動組合의 會計監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公開할 수 있다.

으로 정한다.

(현행과 같음)

③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이나 1 천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노동 조합은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선거의 관리 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u>회계감사원</u>	또는
<u>감사위원회로</u>	<u>-</u>	
②	<u>회계감사</u>	·원 또
는 감사위원	<u> 회는</u>	
	<u>.</u>	

第9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第9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생략)
- 2. <u>第21條第1項 · 第2項 또는 第</u> 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 수에 위반한 者

第92條(罰則)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자
第93條(罰則)
1. (현행과 같음)
2. <u>제31조제3항</u>